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7.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 강화를 위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을 2023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수리 관련 설계심사·승인 및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3명)은 증원하되, 1명(6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문화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및 신 · 구정원대비표, 별첨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설계심사·승인·기술지도 및 현장공개 등에 관한 사항

제34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청”을 “문화재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3장(제3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 한시조직

제38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추진단) ①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을 둔다.

- ②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총괄·조정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관련 기초 조사·연구
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대외협력
5.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
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관련 각종 기술지도 및 현장 점검
8.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78”을 “282”로 하고, 일반직 계 “277”을 “28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66”을 “270”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문화재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4항 관련)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준속기한: 2023년 7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이하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재보존국) ① (생 략)	제8조(문화재보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②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u>중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 심사, 기술지원 · 지도</u>	1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설계 심사 · 승인 · 기술지도 및 현 장공개 등에 관한 사항
14의2. ~ 16. (생 략)	14의2. ~ 16. (현행과 같음)
제34조(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u>문화재청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 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 다.</u>	제34조(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u>문화재청(「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3장 한시조직</u>
<u><신 설></u>	제38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 비추진단) ① <u>문화재청 문화재</u>

보존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을 둔다.

②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총괄·조정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관련 기초 조사·연구

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대외협력

5.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

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

비사업 관련 각종 기술지도
및 현장 점검

8.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학
술대회, 세미나, 발표회 및 공
청회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

④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
비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78</u>	<u>282</u>	+4
•	•	•	
•	•	•	
일반직 계	<u>277</u>	<u>281</u>	+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66</u>	<u>270</u>	+4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0